2020년도 제23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한 국 은 행

1. 일 자 2020년 10월 29일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(총재)

고 승 범 위 원

임지원 위원

조 윤 제 위 원

서 영 경 위 원

주 상 영 위 원

이 승 헌 위 원(부총재)

4. 결석위원 없 음

5.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

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

이 환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

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

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

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

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성 광 진 의사팀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## <의안 제46호 -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「한국은행법」제28조제3호·제9호,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.

## (2) 위원 토의내용

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10월 2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.

위원들은 미국 및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·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.

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 연 장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.

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의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음.

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내외 금융·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점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양상, 국내외 금융·경제 상황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.

## 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한다.

<붙임>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(안)(생략)